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09년 5월 4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09년 5월 6일

라. 상정일자 : 2009년 5월 18일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

나. 제안이유

-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육·복지·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지역 문화·복지 환경을 개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

☐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 토 지 : 23필지 42,032m²

○ 기준가격 : 5,955,190천원(가감정액)

라.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배 정 미

○ 본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 구미시 구평동 126-1번지 외 22필지 42,032㎡(감정가 5,955,190천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결과

- 본 건은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강동지역에 종합문화복지시설 건립 부지확보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민원발생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